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검 토 보 고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운영 등〉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64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입법 배경	4
(1) 교육발전특구 개요	4
(2)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현황	5
(3) 유사 입법례	7
2.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9
3. 조문의 구성체계	12
4. 주요 조문별 검토	13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13
(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15
(3)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 지정해제 등(안 제5조 및 제6조) ...	17
(4) 교육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안 제7조)	22
(5)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23
(6) 아동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특례(안 제10조)	26
(7)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11조)	29
(8) 학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32

(9) 기초학력보장 및 지역 교직원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35
(10)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39
(11) 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41
(12) 국회에 대한 보고(안 제18조)	43
(13)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안 제19조)	44
(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20조)	45
(15) 부칙	46
 【참고자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4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7.
3. 회부연월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과도한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방 소멸 및 지역 교육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발전동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 다.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한 거점형 늘봄학교 및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마.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입학 등 허용, 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편성의 자율적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보장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에 교원을 증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직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1) 교육발전특구 개요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에 따라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 동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	↓	↓
추진 방향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유보통합 시범운영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 지역 인재 선발·양성
	↓	↓	↓
성과 지표	· 출산율 상승	· 학업성취도 상승 · 사교육비 감소	·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자료 : 교육부)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타 특구와 연계를 강화하며, 교육개혁과제(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를 우선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특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¹⁾.

(2)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현황

- 교육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원칙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및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 2024년 2월 1차로 31개 특구, 7월 2차로 25개 특구, 2025년 7월 예비지역 추가 지정으로 8개 특구를 지정하여 총 64개 교육발전특구에 7개 광역지자체 및 94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교육발전특구 유형별 신청단위 및 주체]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자료 : 교육부)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현황]

유형	신청 단위	1차('24. 2월)	2차('24. 8월)	예비지역 추가 지정('25. 7월)	계
1 유형	기초 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21건 (21개 기초 지자체)	7건 (7개 기초 지자체)	48건 (49개 기초 지자체)
2 유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 지자체)	1건 (1개 광역 지자체)	-	7건 (7개 광역지자체)
3 유형	광역지 자체가 지정하 는 기초 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3건 (3개 광역, 19개 기초지자체)	1건 (1개 광역, 4개 기초지자체)	9건 (9개 광역, 45개 기초지자체)
계		31건	25건	8건	64건

(자료 : 교육부)

- 교육부는 2024년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²⁾, 지정된 특구당 30~100억원 상당을 재정 지원하고 있고 2024년에 1,892억원, 2025년에 3,008억원('25년 10월 말 기준) 등 2년간 총 4,900억원을 교부하였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부산	30,465	33,000	63,465
대구	21,444	20,200	41,644
인천	3,300	3,000	6,300
광주	11,000	11,000	22,000
대전	10,070	10,000	20,070

2)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부대의견(“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을 근거로 들고 있음.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금액으로, 교부대상은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시·도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임.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울산	3,028	5,271	8,299
세종	126	3,000	3,126
경기	7,451	21,125	28,576
강원	18,451	29,137	47,588
충북	4,213	13,785	17,998
충남	9,100	11,860	20,960
전북	15,560	34,810	50,370
전남	4,877	24,144	29,021
경북	29,652	38,158	67,810
경남	13,866	35,713	49,579
제주	6,600	6,600	13,200
합계	189,203	300,802	490,005

(자료 : 교육부)

(3) 유사 입법례

-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도심융합특구, 평화경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이 각각 근거법률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도 교육국제화특구³⁾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교육발전특구 운영 현황]

구분	소관부처	근거법률
기회발전특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구	통일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도심융합특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임(근거법률 제2조)

- 교육분야 특례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등을, 도심융합특구에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를, 혁신도시에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분야 특례 현황]

법률명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2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가 심각한 실정임. 특히 지역의 교육 및 거주 여건 부족으로 우수 인재 양성 및 유치가 어려워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구에 지정된 경우 유치등 돌봄, 학교설립, 교원 배치, 교육과정 등의 특례 적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교육 및 거주환경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교육부는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⁴⁾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해당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지원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⁵⁾⁶⁾.

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참고(p.47)

5)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시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한 바 있음.

6) 교육부는 시범사업 이후 본격적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발전특구는 각종 법적 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별 맞춤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와 관련 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2건의 「교육발전특구의

□ 다만, 제정안은 교육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특례 적용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만의 특례 적용으로 지역 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지구 내 학교설립 및 교육과정 예외 적용, 교원 및 직원의 추가배치 및 교원 자격 완화 등의 특례 등으로 교육제도의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 저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특례 적용 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제정안의 규정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제 특례 등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제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정안의 ‘신청 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불분명한바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구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교육균형발전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의원대표발의, 2206874)(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205895)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법안 심사 시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음.

구계획’은 지구의 지정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제정안의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는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 협의, 자문 등으로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이는데, 해당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위원회인지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보다 명확히 그 성격과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외 제정안의 ‘교원 간의 교차지도’ 특례는 통합운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되나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제정안의 목적이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인 점에서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한다는 현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운영 목적과 유사하므로, 제정안의 교육균형발전지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조문의 구성체계

- ☐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으로, 본칙 20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 구성>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 본칙(20개 조문)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지구의 지정 등)	제6조(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7조(교육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제8조(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지구 전담기관 등)	제10조(아동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특례)
제11조(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12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3조(교육과정의 특례)	제14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15조(기초학력보장 및 지역 교직원에 관한 특례)	제16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제17조(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9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균형발전지구”란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및 정주기반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이란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 ☐ 제정안 제1조는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의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이나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및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적조향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교육균형발전지구”,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사용빈도가 높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⁷⁾. 제정안의 교육균형발전지구 및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은 이 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규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은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인바 용어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244

(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유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체적·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바⁸⁾, 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의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입법례⁹⁾ 등을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257

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4조는 교육균형발전지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률을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해당 법률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¹⁰⁾.

제정안은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제 특례 등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제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¹¹⁾.

10)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258

1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 지정해제 등(안 제5조 및 제6조)

제 정 안
제5조(지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② 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의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지구계획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주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구의 지정, 지정신청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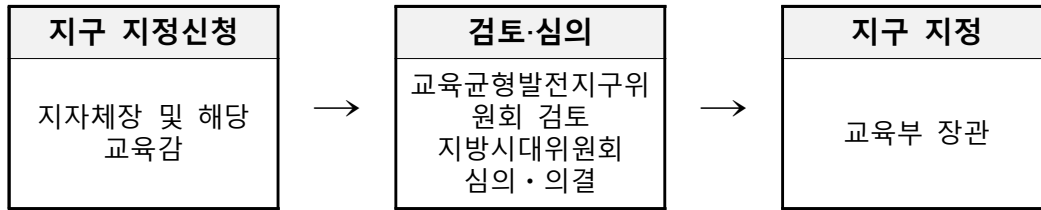
제 정 안

거쳐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지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에 앞서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 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의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정해제 및 계획 변경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안 제5조 및 제6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수도권 제외지역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 신청 시 협약체결,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 제출, 주민 등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지구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의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제정안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 절차]



□ 제정안은 지구의 지정신청·지정·지정해제·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공동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신청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²⁾.

다음으로, 제정안은 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시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 사전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¹³⁾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1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있느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안 제8조) 이에 더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은 지구의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계획안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⁴⁾.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그 외 제정안은 지구 지정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구의 지정·운영은 해당 지역 교육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직접 이용자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¹⁵⁾).

7.~ 19. (생략)

④ 시·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④ 시·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교육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정안 제7조는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제정안은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제 정 안
제8조(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이하 “지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지구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 3. 지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4. 지구의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 평가 5. 그 밖에 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지역 전문가 및 그 밖에 지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지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구 전담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정안(제8조 및 제9조)은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지구 전담기관 지정 및 지구 전담 조직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는 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지구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의 지역 기여도 및 영향력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취지로 지구 관련 업무의 사무처리기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는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 협의, 자문 등으로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이는데, 해당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위원회인지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보다 명확히 그 성격과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문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⁷⁾.

- 행정안전부는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 전 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거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무국’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는 의견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유의 권한으로, ‘지구 전담기구’ 설치에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하에 추진 필요가 있으므로 설치 의무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아동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특례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아동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정규과정 외의 시간 동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보육 전문가 및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정규과정 외의 시간 동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¹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유아교육법」 19)과 「영유아보육법」 20)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

18)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9)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집의 정규과정 외의 시간 동안의 보육 및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현행법상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과정운영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제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 사업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바 사업의 수행 주체, 비용 지급 주체, 재원 마련 대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에서 정규과정 외의 시간에도 연장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까지 서비스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20)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제공하는 등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지역아동센터 개요>

□ 개요

- (목적) 방과 후 돌봄 필요한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 제공('04~)
 - *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이용대상) 18세 미만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 아동(시설별 우선돌봄아동 50% 이상)
- (제공서비스) 아동보호(안전,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 설치현황

- 2024.12월 4,206개소 설치·운영, 센터별 평균 26.3명 아동 이용
 - * 연도별 현황(개소) : ('04) 895 → ('14) 4,059 → ('19) 4,217 → ('23) 4,230 → ('24) 4,206

센터 수	운영 주체 현황 (개소)				이용 아동 수 (명)	
	개인	법인	단체	공립	정원	현원
4,206	1,811 (43.1%)	2,195 (52.2%)	169 (4.0%)	31 (0.7%)	119,875 (센터별 28.5)	110,838 (센터별 26.3)

※(이용아동) 총 11만여명 아동이 이용 중으로 기초수급자, 장애·다문화·한부모가구 등 우선돌봄아동이 주 이용(63.8%)

계 (명)	우선돌봄 아동					일반아동	
	수급자 및 차상위	다문화 및 장애인	조손 및 한부모	다자녀	돌봄특례 등	맞벌이 가정	기타 일반아동
110,838 (100%)	20,882 (18.8%)	20,289 (18.3%)	11,668 (10.5%)	4,624 (4.2%)	13,251 (12.0%)	7,204 (6.5%)	32,920 (29.7%)

□ 2025년 예산 : 총 2,775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총액	2,518억원	2,775억원
인건비	(센터장) 월 305만원 (생활복지사) 월 268만원	(센터장) 월 313만원 (생활복지사) 월 274만원
운영비	월 139만원	월 139만원
추가 운영비	월 20~30만원	월 20~30만원

(7)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 정 안
제11조(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하 “늘봄학교”라 한다)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의 늘봄학교(이하 “거점형 늘봄학교”라 한다)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시설로서 학교 밖의 시설(이하 “거점형 늘봄센터”라 한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 책임,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교구의 관리·점검·보수·교체 등 조치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의 확인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센터 등 학교 밖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의 통학을 위한 차량의 운영 2. 안전사고 및 범죄 등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방범시설의 설치 3. 늘봄학교 운영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

□ 제정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외 교육활동(늘봄학교)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의 늘봄학교(거점형 늘봄학교)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형 늘봄학교의 교직원 지도·감독, 학교 시설 및 교육 시설 등의 안전·유지 관리, 이용 학생의 안전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늘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게 늘봄 수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시설 또는 학교 밖 시설(거점형 늘봄 센터) 등의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공백을 해소 하는 한편,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특례 적용으로 거점형 늘봄학교 이용 학생의 안전을 보장 및 운영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제정안 거점형 늘봄학교 관련 특례]

구분	기본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특례
민원처리, 교직원 지도·감독	학교장이 수행 ²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수행 가능
시설 안전 관리		
학생 안전대책 마련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교장이 운영 ²²⁾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운영 가능
안전사고 보상	학교장이 늘봄 운영 중에만 가능 ²³⁾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늘봄 운영 중에도 가능

□ 제정안과 같이 거점형 늘봄학교를 장려하는 경우 학교별 늘봄 참여 수요가 커 학교 자체 자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거나, 학교별 늘봄 참여 수요가 적어 학교별 운영 상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 해소를 통해 지역의 여건 및 지역의 수요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1)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30조의9(시설·설비·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사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학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 정 안
제12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 수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구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이하 “농어촌학교”라 한다)로의 전학·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 제정안 제12조는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24)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²⁵⁾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13조는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14조는 교육감은 지구 내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함.

24)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5)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제정안들은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설립기준 및 교육과정 등의
규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 지역 학교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전·입학 허용 및 특수학교 설치
등을 하려는 것으로,

지역 수요 및 상황에 따른 교육환경 제공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에서 학교설립, 교육과정 운영 및 전입학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⁶⁾.

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
· 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
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
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
하여 줄 것을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
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
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중등
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

(9) 기초학력보장 및 지역 교직원에 관한 특례

제 정 안
제15조(기초학력보장 및 지역 교직원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실시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지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을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과 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 학교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 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과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정안 제15조는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 지원교육²⁷⁾ 실시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중등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구 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구 내 교육기관의 교원과 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들은 현행법상 교원 및 공무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²⁸⁾, 수당 기준²⁹⁾, 교원의 자격기준³⁰⁾을 지구 내의 학교운영 시 특례를 적용

27)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8)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29)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30)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우수 교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원이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 수급정책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제정안의 교원 간의 ‘교차지도’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서로 다른 학교급의 교원이 해당 학교급 학생을 넘어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현행법상 교원 자격증이 학교급별로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합 운영학교(초·중·고 통합운영학교)³¹⁾의 운영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 자격의 유연화를 통한 교차지도 허용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지구 내 교원 및 직원의 추가배치, 교원 자격 완화 등은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성, 교원 자격증에 대한 법적 안정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교원 간의 교차지도는 통합운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되나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1)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³²⁾.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0)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지구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정안 제16조는 지구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³³⁾에도 불구하고 사증의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반 연수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3)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발급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제정안은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절차 및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인구소멸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유학생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경우 재정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1) 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 제정안 제1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내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구 내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해당 지역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가능하도록 하여 특구 내 교육 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재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취지로 ‘수익계약’을 고려한 조문으로

이해되는바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³⁴⁾. 다만 이 경우에도 국유재산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매각·대부 등은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외교·국방상의 사유가 있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점³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지구 내 학교의 신·증설 사업의 공익성, 입법례 등에 비추어 국유재산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35)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4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국회에 대한 보고(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8조는 교육부장관이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운영은 교육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업무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의 제시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국회에 대한 보고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³⁶⁾.

3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의 목적이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시책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이 제정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³⁷⁾.

그 외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에 담을 경우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 두는 것이 법제적으로 바람직해 보임.

37)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와 유사한 체계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교육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지구 혹은 특구 내에서 이루어질 내용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구의 체계와는 맞지 않은 다는 의견임.

(14)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정안 제20조는 지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³⁸⁾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운영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3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5)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둠³⁹⁾.

이에 비추어 제정안에 따라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종료 후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85

39)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참고자료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 7개 광역지자체 및 94개 기초지자체

유형	신청단위	1차지정	지자체명	2차지정 (추가지정 포함)	지자체명
1 유 형	기초 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 (강원) 춘천, 화천, 원주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 (충남) 서산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 (전남) 광양	28건 (28개 기초 지자체)	-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홍천 - (충북) 보은, 증평, 청주, 영동 - (충남) 공주, 금산 - (전남) 순천 -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주, 문경 - (경남) 남해, 통영
2 유 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1건 (1개 광역 지자체)	- 세종
3 유 형	광역지 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 충남 (아산) - 경북 (안동-예천) -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4건 (3개 광역 지자체, 23개 기초지자체)	-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 전남(추가지정) (고흥, 보성, 완도, 진도)
계		31건		33건	